
[2012.7.22] [23644 , 2012.2.29,]

() 02 - 2100 - 6378~80

1 () 「 」

[2011.6.27]

2 () 「 (" ") 2 3
(" ")
· , 가

「 」 4

2

[2011.6.27]

3 (가) 3 1 " (" ")
(軍) · " (" ")

1. 「 · 」 54 4 56 · 「 」
59

2. 「 」 26 「 」 44 4 「 」 49

3. 「 」 33 2 35 38

4. 「 · 」 6

5. 「 」 2 3

6. 「 」 38 , 39 가 ,
39 2 42

7. 「 」 41 2

8. 가 가

9. 1 8 가

[2011.6.27]

4 (가) 3 2 가 「 」 19 (" ")

1 5 가 ·

1 2 · 가

가 4 1 가

5. 「 」
6. 「 」 6 (6 5)

7. 「 」 ()
8. 「 」 32 33 3

7 2 4 「 」 가 가

7 2 5 「 」

[[2011.6.27](#)]

10 () 7
1

[[2011.6.27](#)]

11 () 7 5 . < [2001.6.29, 2008.9.18](#) >

12 () 8 1
1

[[2011.6.27](#)]

13 () 가 8 1

1. : 140

2. : 80 (「 」 57 1 3 120)

1

[[2011.6.27](#)]

14 () 9 4
17

[[2011.6.27](#)]

15 () 9 1
1

. < [2011.6.27](#) >

. < [2011.6.27](#) >

<2008.9.18>

9 2

.<

2011.6.27>

[2011.6.27]

16 () 9 1

1. 가 : 13

2. ()

:

가. : 48

. : 36 (「 」 57 1 3

42)

9 2

1. 1 1

가. : 84

. : 48 (「 」 57 1 3 65)

2. 1 2

가. : 48

. : 36 (「 」 57 1 3 42)

[2011.6.27]

17 () 5 가 , 11 , 13

16

1.

2.

3.

[2011.6.27]

18 () 5 가

1 가 , 5 1 1

가 15

가 30

[2011.6.27]

19 () 11

1. 10 1

2. 12 1

3. 15 1

11

1. 3 3 가 (受理)

2. 7 1 2

3. 8

4. 4 4 가

5. 15 2 .

[[2011.6.27](#)]

19 2() (19 가 「 」 19 1

가

1. 4 가

2. 7

3. 8

4. 9

[[2012.1.6](#)]

20 ()

(" ") .

1. 가

2.

3.

4.

5.

1 1 15

(互選)

[[2011.6.27](#)]

21 (.) 12 1

[[2011.6.27](#)]

22 ()

1. 3 2 가

2. 7 1 2

3. 8

4. 9 1

5. 1 4 가 . .

1 「 」 2 1 1
2 4 .
[[2011.6.27](#)]

< 15478 ,1997.9.11 >

< 15925 ,1998.11.9 >

< 15967 ,1998.12.31 > ()

1 () 1999 1 1 .
2 4
5 ()

3 4 .
4. 2 2

6

< 16093 ,1999.1.29 > (.)

1 () .
2 3
4 () <30 >
<31 >

3 5 .
5. . 8

18 .

4 1 " " " .
8 " .
<32 > <47 >

< 16131 ,1999.2.26 > ()

1 ()

2 ()

3 5

5. 14 4 18 가

< 16539 ,1999.8.19>

< 17115 ,2001.1.29>()

1 ()

2 4

5 () <59>

<60>

2 2 , 3 6 , 4 1 • 2 • 3 • 4 , 6 , 8 , 9 1 7 , 10
1 • 2 • 3 , 12 1 • 2 , 15 1 • 2 • 3 , 18 1 •
2 • 3 , 19 1 • 2 21 " " " "
4 1 , 5 1 2 • 2 , 7 6 , 10 1 • 2 , 12 1 • 2 ,
13 2 , 15 1 • 2 , 16 1 4 , 17 22 " "
" "

<61> <152>

< 17259 ,2001.6.29>

() 2001 6 29 , 1 2002 3 1

() 9 1

< 17296 ,2001.7.7>()

1 () 2001 7 8

2 ()

3 3 " . 6 " " . 6 " .

3

< 18101 ,2003.9.19>()

1 () .

2 () .

9 1 7 " " " " .

3

< 18783 ,2005.4.15>

() . , 1 3 6

() 14 17

()

< 18911 ,2005.6.30>()

1 () 2005 7 1 .

2 4

5 () <16>

<17>

3 4 " 2 2 " " 「 」 2 3 " .

6

< 18972 ,2005.7.27>(3)

1 () .

2 ()

9 1 4 .

4. 「 3 」 3

< 19719 ,2006.10.27>()

1 () 2006 10 29 .

2 4

5 () <16>

<17>

3 5

5. 「 」 38 42 가

<18> <19>

6

< 19984 ,2007.4.4>

< 20222 ,2007.8.17>()

1 () .

2 7

8 ()

3 6 " 24 2 " " 35 2 " .

9

< 20607 ,2008.2.14>()

1 () 2008 2 15 . < >

2 5

6 () .

4 1 " 「 」 8

(" ")" " 「 」 19 (" "

)" , 20 1 " " " " .

7

< 20740 ,2008.2.29>()

1 () .

2 6

7 () <62>

<63>

2 2 , 3 7 , 6 , 8 , 9 1 7 , 18 1 , 2 3 , 19 1

2 , 21 " " " "

4 1 " " " " " " " "

, 2 , 3 4 " " " " "

5 1 1 " " " " , 2 2 "

" " " "

7 6 , 13 2 , 16 1 3 • 4 , 17 , 22 "

" " " "

10 1 " " " " " " " "

, 2 " " " " " " "

" " " , 3 " " " "

12 1 " " " " " " " "

, 2 " " " " " " "

" " " "

15 1 " " " " " " " "

, 2 " " " " " " "

" " " , 3 " " " "

1 , 3 4 " " " "

" , 2 " " " " , 1 "

" " 가 " "

<64> <102>

< 20799 ,2008.6.5>()

1 ()

2 ()

9 1 9 " 21 " " 33 " , " 22 3 " "

33 3 " "

< 21005 ,2008.9.18 >

1 () , 16 1 2 2 2

2009 9 1 .

2 () 1

7 1 가 2011 8 31

16 1 2 2 2

< 21461 ,2009.4.30 >

1 () 2009 5 1 .

2 () <18 >

<19 > .

3 6 .

6. 「 」 38 , 39 가 ,

39 2 42

<20 > <21 >

< 22356 ,2010.8.25 >

1 () 2010 9 1 .

2

3 ()

9 1 8 " 「 」 " " 「 」 " .

4

< 22560 ,2010.12.29 >

1 () 2011 2 5 .

2 4

5 ()

3 7 " 「 」 36 2 " " 「 」 41 2

" .

[별표] <개정 2011.6.27>

학점인정의 기준(제11조 관련)

구 분	학점인정의 기준
<p>1.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자, 교육과정 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</p>	<p>가.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.</p> <p>나.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.</p> <p>다. 학습과정은 4주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.</p> <p>라. 강의시간은 50분(실험·실습·실기의 경우에는 100분)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마.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, 학기(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</p> <p>바.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의 경우에는 다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.</p> <p>사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, 그 밖에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</p>
<p>2.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취득자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</p>	<p>가.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.</p> <p>나. 해당 자격 취득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되,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.</p>

<p>3.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합격자 및 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자</p>	<p>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가. 교양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: 20학점</p> <p>나.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: 30학점</p> <p>다.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: 30학점</p> <p>라.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: 30학점</p>
<p>4.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</p>	<p>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가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: 140학점</p> <p>나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: 60학점</p> <p>다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: 30학점</p> <p>라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: 21학점</p>

비고

1.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.
2.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,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(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)까지,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, 그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3. 위 표 제2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, 해당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습 내용과 위 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학습 내용이 중복될 때에는 위 표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중복되는 학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